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14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엄태영 · 박충권 · 이만희
권영진 · 김상훈 · 이종욱
서천호 · 김재섭 · 배준영
박성민 · 강명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등의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를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워 형식적으로 미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가 있었다라도 수급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시점부터 연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0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1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⑧ 제4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의 시점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용된다는 뜻과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지체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⑨ 원사업자가 제8항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제1항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2호 중 “제3조제12항”을 “제3조제14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생략)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과징금)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14항-----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 4. (생략)

②·③ (생략)

-----.

1. -----

제14항-----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